

특별공급 청약안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청약 일정

구분	신청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22.06.14.(화) ~2022.06.15.(수)	• 청약Home 인터넷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분	84A	84B	84C	110A	110B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4	22	2	9	8	85

▣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구분	내용
신청 자격 (각 항목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경우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전혼자녀(미성년자)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 관계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안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

- ※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거,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 이후 파기)

구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동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 경과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부적격 소명자료	○		무주택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